

서울특별시의회
제301회 정례회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2472호)

제 안 설 명



2021. 6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 기 열

(더불어민주당 동작 제3선거구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)

안녕하십니까? 박기열 의원입니다.

지난 5월 28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한부모가족이란 사별,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입니다.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(母) 또는 부(父)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.

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.5%를 차지하고 있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.6%, 사별이 15.4%, 미혼 4%, 별거 2.9%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.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.

한부모가족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1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%이하,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%이하인 경우로 서울시에는 2021년 3월기준 5,893가구가 해당됩니다.

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%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%에 그치

는 열악한 실정(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.5.1.)이기 때문에,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.

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(월 10m³)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